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 일부 발췌〉

산업동물 임상체계 재구축

연구책임자 : 이창우 교수(서울대 수의과대학)

※ 본 원고는 지면관계상 연구 용역결과 보고서를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1. 서론

이 보고서에서 고기, 생선, 젖(乳), 알(卵) 및 꿀을 생산하는 동물을 ‘산업동물’ 이라고 하며, 산업동물의 진료를 전공으로 하는 수의사를 ‘산업동물 수의사’, 산업동물에 대한 의학을 ‘산업동물 수의학(food supply veterinary medicine)’ 이라고 한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산업동물 수의사는 산업동물의 직접적인 진료를 직업으로 하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이런 동물의 전염성질병, 기생충성질병, 중독성질병 등에 관한 연구, 교육, 위생검사, 검역 등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산업동물의 직접적인 진료를 직업으로 하는 수의사와 그들과 관련된 진료를 위주로 기술한다.

이 보고서에서 ‘산업동물 수의사’ 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수의사’ 로 기술한다. 산업동물과 대조적인 단어로써 흔히 사용되는 애완동물

은 반려동물(companion animal)로 기술한다. 이 보고서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동물’ 은 산업동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별히 산업동물을 강조할 때는 ‘산업동물’ 및 ‘산업동물 수의사’ 로 기술한다. ‘대동물’ 이라는 표현은 가금류와 별 같은 작은 동물을 제외한 산업동물과 말이 포함될 때 사용하였다.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가 수의학 교육과 연구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능한 수의사를 확보하여 산업동물의 생산과 건강을 관리함으로써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동물성 식품(이하 식품이라고 함)을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식품안전표준이 강화되면서 수의사의 역할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한편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하고 난 후 생물테러와 농업테러의 방어에 기여하는 것이 산업동물 수의사의 기능으로 추가되었다¹⁰.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 등 선진국을 필두로 식품위생표준이 엄격해지면서 수의사의 역할

이 증대되고 있지만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졸업 후 산업동물 수의학 분야에 취직하려는 지원율이 점점 낮아져서 국가적인 위기로 대두되어, 나라마다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식품공급체계의 모든 과정에 수의사가 적절하게 참여함으로써 국민에게 풍부하고 안전하며 건전한 식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임무를 갖고 식품공급수의학연합(Food Supply Veterinary Medicine Coalition, 이하 FSVMC)이 2004년에 결성되었다. FSVMC의 전제는 '식품의 안전과 건전성은 수의사가 생산과 가공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때 강화된다'는 것이다. FSVMC는 2004년 5월에 Kansas주립대학교 경영대학의 3명의 교수에게 의뢰하여 산업동물 수의사의 수급과 그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하여 2006년도 미국수의사회지에 3회에 걸쳐서 결과를 발표하였다. FSVMC 위원에는 Academy of Veterinary Consultants, 미국조류병리학자협회, 미국소(牛)수의사회, 미국식품위생수의사회, 미국중소(中小)반추동물수의사회, 미국돼지수의사회, 미국수의과대학협회, USDA-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 캐나다수의사회가 FSVMC의 연구에 동참하였다^{9,10}.

영국에서는 국회의 환경식품농촌위원회가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전략과 수의사에 의한 동물의 건강과 복지문제에 대한 감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2003년 10월 15일에 발표하였다².

호주의 농림수산부에서는 미래의 식품 국제무역의 엄격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동물건강을 증

진시킬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것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의사를 확보하며 '수의사에 의한 감시(surveillance)를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2003년 1월에 발표하였다⁸.

수의사에 의한 감시는 동물과 관련된 부분과 식품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동물이 관련된 부분은 질병, 감염, 중독 및 복지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질병 제어와 예방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해 당사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과 관련된 부분은 각종 식품에 동물약품이 잔류하지 않도록 유통과 사용 과정에 감독과 지도를 하고, 식품 중의 잔류물질을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의사에 의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선진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수의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켜 수의사들이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산업동물의 건강·복지를 확보하고 식품위생과 안전의 표준을 지키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런 정책 중 가장 모범적인 정책은 약 6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의 가축공제제도로써 농민들의 호응도 대단히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amane(2005)에 의하면 최근 일본에서는 광우병(BSE),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등을 계기로 식품의 안전과 안심의 확보를 비롯하여 해외감염성동물질병의 침입방지, 사람과 동물의 공통전염증의 방압(防壓), 동물임상, 산업동물위생, 공중위생 등, 각 분야에서의 위기관리에 대한 준비가 요청되고 있다고 한다¹⁶.(중간생략)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 및 일본의 수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산업동물 수의사가 되기를 기피하는 현상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산업동물의 건강·복지 및 식품위생안전의 높은 표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수의사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이것들을 지켜내기 위해 수의사들이 축산농가에 방문하고 수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문헌과 법규 연구를 통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일본의 가축공제제도에 관한 법규^{19,20,21}를 조사하였으며, 2006년 6월 19일부터 1주일간 연구원 2명을 북해도에 파견하여 '가축공제제도에 대해 법규'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사항까지 조사하였다.

연구원들이 방문한 기관은 북해도농업공제조합연합회, 북해도농업공제조합연합회연수소, 石狩(이시카리)진료소, 石狩지역 목장(中澤牧場), 북해도수의사회, 오비히로축산대학, 十勝(토까치)농업공제조합본부, 十勝농업공제조합南部진료소, 남부사업소 관내 영농조합법인 Cosmoagri Dairy Farm, 十勝육성우목장(나이타이목장), 十勝농업공제조합幕別(마꾸베츠)진료소, 十勝농업공제조합豊頃(도요코로)진료소 등 12개의 기관 및 목장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동물 수의사들의 진료 여건과 병원운영형태 및 일본 가축공제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에 대한 수의사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첨부서 1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산업동물만을 진료하는 수의사와 혼합진료를 하는 수의사 1,046명에게 설문지를 보냈는데 45부가 반송되었고 224부가 기간 내에 회수되었다.

그 중에서 11부는 설문 내용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하여 대부분의 문항에서 총 213명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고 일부의 문항에 대해서만 214명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답변하지 않은 일부의 문항에서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복수로 답변할 수 있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숫자를 분모로 하여 백분율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중간생략)

3. 일본의 상황과 가축공제제도¹⁹

일본에서는 현재 전체 수의사수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동물진료를 직업으로 하는 수의사의 직역 점유율은 최근 10년간 42%에서 46%로 증가하였는데, 반려동물수의사의 점유율은 22%에서 31%로 증가한 반면 산업동물 수의사의 점유율은 19%에서 15%로 감소하였다¹³. 일본에서는 산업동물 진료의 대부분을 농업공제조합 가축진료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농업공제조합에서는 각 대학을 방문하여 학생들의 취업을 독려하고 있다. 이런 정보로 보아서 일본에서도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산업동물 수의사가 되기를 꺼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가축공제제도를 통해 질병과 사고로 인한 축산농민의 손실을 보상해 주고 있으며, 산업동물의 건강·복지와 동물성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생산단계에서 지켜줌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수의사에 대한 고용 효과가 크며 수의사는 농업공제조합 단체의 직원으로서 적절한 급료를 받고 있다.

일본의 가축공제제도는 농업재해보상법에 근거한 농업공제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농업공제제도의 목적은 농업재해보상법 제1조에서 '농민이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을 꾀하고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6,17,18}. 가축공제제도의 근간은 이 제도에 가입한 축산농민으로부터 공제료를 받고 가축이 폐사 또는 질병에 걸려 농민이 손해를 보게 될 경우에 그 손실을 공제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이다.

농민 입장에서 이 제도의 최대의 장점은 국가가 공제료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주는데, 소와 말의 경우 50%, 돼지의 경우 40%를 부담해주고, 군(群, herd) 건강관리 사업에는 60%를 지원해줌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농민에게는 대단한 국가의 지원이며, green zone에 해당되기 때문에 WTO의 제제를 받지 않는다. 농업재해보상법은 1947년 12월에 처음 공포되었으며, 북해도에서는 1948년 4월에 북해도농업공제보험조합과 북해도농업공제조합 연합회가 창립되었다. 농업공제제도는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市 町 및 村의 농업공제조합(이하 조합), 광역자치단체의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및 국가의 농업공제재보험 특별회계(이하 재보험)에 의한 3단계 제도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축공제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조합에서는 가축진료소(이하 진료소)를 직영한다. 북

해도연합회에서는 연수소(研修所)를 설치하여 각 지역의 진료소 업무를 막강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이 연수소는 수의사의 소 돼지 말에 대한 진료수준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 이 연수소의 지원으로 인해 진료소 수의사들의 실력은 미국 수의사들과 대등하다.

이 사실은 그만큼 공제에 가입한 축산농민이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염가에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 현재 전국 조합 및 연합회에 288개의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고 1,660명의 수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북해도에는 2006년 현재 88개소의 진료소가 설치되어 수의사 684명과 인공수정사 약 120명 및 사무원이 종사하고 있다. 북해도에서는 진료소당 7.7명의 수의사가 근무하며, 수의사 1인당 젖소단위로 환산하여 약 1,250두를 담당하고 있다(환산율: 유우 1, 비육우와 말 1.0, 돼지 0.1). 축산농민의 조합 가입률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현재 북해도의 경우 농가 45,000호 중 40,000호(89%)가 가입하고, 가축 233만두 중 175만두(75%)가 가입해 있다. 북해도에서 조합 진료소의 진료시장 점유율은 약 90%이다.

1948년에 북해도 메무로쵸에 진료소가 창설되었으니까 일본의 가축공제제도의 역사는 약 60년에 달한다. 공제제도를 처음 실시할 때 농민의 가입률이 낮은 것이 문제였으며, 여러 차례 농가를 방문하여 농민을 설득하여 가입시키는 과정을 경험했다. 현재는 대다수의 농민들이 공제제도를 환영하며, 어떤 농민들은 '공제제도가 없으면 일본의 축산업은 망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진료소에서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농민의 가축도 진료

해 줄 수 있는데, 이 경우 진료비는 가입한 가축의 진료비와 차이를 두어 상대적으로 비싸게 받는다.

진료소 수의사의 근무시간은 사무직과 같으며, 근무시간 외 응급진료에 대해서는 1.5배의 추가 수당을 받는다. 수의사의 평균 월급은 약 100만엔으로서 공무원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다. 조합 수의사의 정년은 현재 60세이지만, 앞으로 65세까지 연장할 계획으로 있으며,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한다. 수의사국가고시에 연간 1,000명 정도 합격하는데, 그 중 80명 정도가 조합에 취직한다. 조합에 취직하기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대학을 순회하여 취업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북해도 조합에서는 매년 30명 정도의 수의사가 교체되고 있는데, 그 중 여자 수의사가 10명 정도이다. 조합은 가축공제사업으로서 진료소와 연수소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 질병 또는 상해의 사고를 당한 공제 가입 가축의 진료
- 손해방지
- 인공수정
- 가축의 인수검사(개체평가)
- 가축공제의 보급과 가입 추진
- 가축방역 등 국가의 모든 축산시책에 대한 협력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 요네병, 부루셀라병, 결핵, 돼지콜레라 등에 대한 예방접종은 공제사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가축보건소의 용역을 받아 실시할 수 있으며, 진료소의 보험 외 수입이 된다.

1. 가축공제의 기본구조

가축공제의 기본구조는 조합이 농민으로부터

공제료를 징수하고, 가축의 폐사 또는 질병에 의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농민에게 공제금을 지불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 가입 농민이 진료소에서 병든 가축의 진료를 받았으면 조합이 진료비를 진료소에 지불함으로써 공제금을 지불한 것이 된다(現物給付). 가축이 폐사하거나 폐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공제금에서 잔유물의 값을 제외하고 지불한다.

2. 공제사업의 책임분담 방식

축산농가들이 일시에 큰 재해에 휩쓸리게 되면 공제금의 지불액이 막대해져 한 조합만으로는 지불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조합들은 공제책임의 일정 부분을 연합회에 보험을 들며 또한 연합회는 보험책임의 일정 부분을 국가의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조합, 연합회, 국가재보험의 3단계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가축공제사업의 경우 법정전염병(예: 구제역)과 같은 이상사고(異常事故)에 대하여는 국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통상사고(通常事故)에 대하여는 조합 20%, 연합회 30%, 국가 50%의 비율로 책임을 분담한다.

그리고 조합과 연합회의 사무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가축공제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간 550억엔이 지원된다.

3. 조합원의 자격

해당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소, 말 또는 돼지의 양축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4. 손해평가 기구

조합에 손해평가원(조사원)을 두어 공제목적의 평가, 손해의 인정 및 손해의 방지와 관련된 업무

를 하며, 손해평가회를 두어 손해의 방지 및 손해의 인정에 관한 심의를 한다.

5. 보상대상 가축과 공제목적의 종류

보상의 대상으로 되는 가축은 소, 말 및 돼지의 세 가지 축종이며, 공제목적의 종류는 乳用成牛, 乳用子牛, 肥育用成牛, 肥育用子牛, 기타 肉用成牛, 기타 肉用子牛, 一般馬, 一般肉豚, 特定肉豚, 乳用種 種牡牛, 肉用種 種牡牛, 種牡馬, 種豚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6. 공제사고

공제사고는 폐용사고(廢用事故)와 질병상해사고(病傷事故, 이하 병상사고)로 분류하여 보상하고 있다. 폐용사고는 사고 내용에 따라 1호~7호로 분류한다. 폐사사고로 인정되면 계약비율에 따라 공제금이 지불된다.

■ 폐용사고의 종류

- 제1호 폐용 : 질병 또는 불의의 상해에 의해 폐사한 것
- 제2호 폐용 : 불의의 재앙으로 구조가 불가능하게 된 것
- 제3호 폐용 : 골절, 파행, 양쪽 눈 실명 또는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질병에 걸린 것
- 제4호 폐용 : 도난 또는 행방불명이 되어 30일을 경과하여도 생사불명인 것
- 제5호 폐용 : 유우의 암컷, 종모우(種牡牛), 종모마(種牡馬)가 치유의 가능성이 없는 생식기질병 또는 상해에 의해 번식능력을 상실한 것

- 제6호 폐용 : 유우의 암컷이 치유 가능성이 없는 비유기의 질병 또는 상해에 의해 비유능력을 상실한 사실이 비유기에 확인된 것

- 제7호 폐용 : 소가 출생 시에 기형 또는 불구에 의해 장래에 사용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병상사고는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사고로서 그 치료를 위하여 들어간 비용(초진료 등을 제외)을 보상해 주며, 인수하는 공제료에 따라 정해지는 [병상지불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가축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거세, 임신감정, 통상 분만의 조산(助産) 등은 병상사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고 이외로 취급되고 그 진료비는 유료로 한다.

7. 공제가액

공제가액은 가입하는 가축의 평가액이다.

8. 공제금액(계약금액)

공제금액은 계약한 공제금 지불의 최고 한도액이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다.

$$\text{공제금액(계약금액)} = \text{공제가액} \times \text{부보율(付保率)}$$

부보율은 계약비율의 의미이며, 농가마다 공제목적의 종류마다 공제가액에 대한 공제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농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 가입한다.

부보율은 농민이 결정하지만 보상의 충실이라는 관점에서부터 최저비율(2~4할 사이로 조합 별

로 설정)과 최고비율(8할)의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 공제금액의 계산 예

- 공제대상 : 젓소 암컷 3두 (가), (나), (다)를 포괄공제에 가입한 경우
- 공제가액 : (가) 50만엔, (나) 30만엔, (다) 20만엔, 합계 100만엔이고,
- 부모율 : 80%로 가입했을 때

공제금액* = 100만엔 × 80% = 80만엔 ... (a)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최대금액

9. 공제로

공제로는 소와 말의 경우 1년 단위로 부과한다.
 농민부담 공제로 = (공제금액 × 공제로적용률) - 국고부담액

국고부담액 = 공제금액* × 공제로표준율 × 국고부담율

*국고부담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

10. 공제료율

공제료율은 공제목적의 종류별로 정관에 정해

진 공제료율甲, 공제료율乙, 공제료율丙을 합계한 율로서 각 조합마다 과거 3년간의 피해율을 기초로 설정한다. 공제료율甲, 공제료율乙, 공제료율丙은 표 2와 같이 구분된다. 공제료율은 공제목적의 종류(乳用成牛, 乳用子牛, 肥育用成牛, 肥育用子牛, 기타 肉用成牛, 기타 肉用子牛, 一般馬, 一般肉豚, 特定肉豚, 乳用種 種牡牛, 肉用種 種牡牛, 種牡馬, 種豚)별로 다르게 책정한다.

11. 공제료표준율 (이하 표준율)

주무대신이 과거의 피해율을 기초로 지역별로 정하고 국고부담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비율이다.

12. 공제료적용률 (이하 적용률)

각 조합이 사고의 발생 정도를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정한 것이다.

즉, 공제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공제료적용률을 높게 책정하고, 공제사고가 낮은 지역은 공제료적용률을 낮게 책정한다.

표준율과 적용률의 차이는 공제료율乙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적용률 중에서 공제료율乙 부분은 한도율이 있어서 표준율과 한도율 사이에서 각 조합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표 2. 공제료율의 구분

乳用成牛의 예	공제료율甲		공제료율乙	공제료율丙
	폐사 또는 폐용에 대한 보상에 적용	병상사고에 대한 보상 중 의약품 등의 비용에 적용*	병상사고에 대한 보상 중 진료기술료 등에 적용*	이상사고에 의한 폐사와 폐용에 적용
乳用成牛 복해도 평균율	5.2%	1.8%	3.6%	0.002%
	폐사부분	병상부분		이상사고부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공제료율甲, 乙, 丙의 합계가 10.602%로서 이것이 복해도에서의 적용률이다. 그런데 공제료율乙의 복해도 적용율은 3.6%이고 표준율은 3.5%이기 때문에 표준율 합계는 10.502%이다.				

13. 공제료율의 절약 및 할인 제도

농민의 공제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범적인 농장관리를 통하여 사고의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폐사·폐용사고와 병상사고가 낮은 농가는 공제금액 부보율을 농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낮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부의 공제사고에 대해서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선택가입제도, 병상사고 보상금액의 한도액을 하향 조절하여 공제료율을 절약하는 공제료율 할인제도, 폐사·폐용사고와 병상사고가 낮은 농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제료율을 적용하는 위험단계별 공제료율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 병상사고 보상금액의 한도액은 소 말 및 중돈의 경우 1두당 평균 40만엔이며, 소의 태아는 1두당 평균 8만엔이다. 폐사·폐용사고와 병상사고가 높은 농가는 위험단계가 높게 판정되기 때문에 그 지역 평균보다 높은 적용률이 적용된다. 이것은 운전사고를 많이 낸 사람에게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할증료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북해도 젓소 1두당 농가부담 공제료는 평균 13,000엔(약 104,000원)이다.

14. 국고부담 대상 공제금액의 한도액

공제료의 국고부담액은 표준율과 국고부담율을 곱하여 산정하나, 그 기초가 되는 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주무대신이 정한 일정의 한도액(1두 평균액)이 정해져 있다(예로서 젓소의 병상지불대상 공제금액한도액은 1두당 40만엔).

■ 공제료 계산 예

(앞에 기술한 계산 예1에 연속된다)

- 공제대상 : 젓소 암컷 3두(가, 나, 다)를

포괄공제에 가입

- 공제가액 : (가) 50만엔 (나) 30만엔 (다) 20만엔 합계 100만엔
- 공제료율 10.602% (적용률) ... (b)
10.502% (표준율) ... (c)
- 공제료 = 80만엔(a) × 10.602%(b) = 84,816엔 ... (d)
- 국고부담액 = 80만엔(a) × 10.502%(c) × 1/2 = 42,008엔 ... (e)
- 농민부담 공제료 = 84,816엔(d) - 42,008엔(e) = 42,808엔

만일 이 예의 농장이 폐사·폐용사고와 병상사고가 적은 목장이라면 공제가입 부보율을 80% 대신 40%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금액이 절반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농민부담 공제료도 약 1/2로 절감할 수 있다.

15. 폐사사고 지불공제금

폐사사고에 대한 지불공제금은 공제가액에서 잔존물가액(殘存物價額)과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이것들을 뺀 금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事故畜의 價額 - 肉皮 등 殘存物 價額 - 補償金) × 부보율

16. 폐사사고 공제금 지불한도액

과거에 폐사사고가 많았던 농가에 대해서는 공제목적의 종류와 함께 폐사 공제금 지불한도액이 설정되어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금이 지불된다. 이 제도는 농민이 폐사사고발생을 줄이고 모범적인 축산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17. 병상사고 지급공제금의 계산방법

병상사고로 인한 진료비는 일정액(병상공제금

지불한도액)까지는 무상으로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단, 초진비와 공제금 지불 외의 의약품비 등은 유료이다.

무상진료에 대한 진료비는 조합, 연합회 및 국가가 공동으로 진료소에 대신 지불하며 이것이 조합이 지불한 공제금에 해당되는 것이다. 농민 입장에서는 지불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진료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제금을 지불하는 주체에서 정확한 지불을 하기 위해 진료항목별 점수표(첨부분서 2)에 의거하여 진료비를 계산한다. 진료점수표 상의 1점은 10엔에 해당된다.

18. 병상사고 공제금 지불한도액

인수하는 공제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병상사고 공제금 지불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제금은 지불하지 않는다. 병상사고 공제금 지불한도액은 농민별, 공제목적의 종류별, 가입공제금액(병상사고 지불대상 공제금액의 한도액 이내)에 따라 결정된다.

병상공제금 지불한도액 = 공제금액(병상사고지불대상 공제금액) × 병상사고 공제금지불한도율

병상사고 공제금지불한도율은 조합별로 공제목적별로 3년마다 개정된다.

■ 병상사고의 지불한도액 계산 예

예1에서와 같이 공제가액이 각각 50만엔(가), 30만엔(나), 20만엔(다)인 젓소의 암컷 3두를 포괄공제에 부보율 80%로 가입했으며, 현재의 병상사고 공제금지불한도율은 8.3%이고, 병상지불대상 공제금액의 한도액이 1두당 40만엔일 때

- 제가액 합계 = 100만엔 (50만엔 + 30만엔 + 20만엔)

- 공제금액 = 100만엔 × 80% = 80만엔 ... (a)

- 병상지불대상 공제금액한도액 = 40만엔 × 3두 = 120만엔 ... (b)

- 공제금액 a가 한도액 b보다 적기 때문에 이 목장의 병상사고 지불한도액 = 80만엔 (a) × 8.3% = 66,400엔

즉, 이 목장에서는 공제에 가입한 세 마리의 진료비를 합해서 66,400엔 한도에서 무상진료를 받을 수 있다.

■ 병상사고의 지불공제금의 계산 예

- 병명 : 유방염

- 왕진거리 : 편도 5 km (통상) ... (h)

- 진료내용 : 유즙간이검사 ... (i)

약물치료 (조제불요) ... (j)

유방주입약의 약가 ... (k)

(h) (i) (j) (k)

- 진료점수 = 187점 + 63점 + 21점 + 15점 = 286점

- 지불공제금 = 286점 × 10엔 = 2,860엔

농민이 조합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지불공제금은 농민에게 직접 지불되는 것이 아니고 진료소에 지불된다.

19. 손해방지사업

조합은 가축의 질병과 폐사·폐용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과 더불어, 잠재하고 있는 질병의 조기발견 등, 경제손실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한 손해방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조합은 진료소 발족 이래 유방염 번식장애 등의 검진을 계획

적으로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사관 정시험에 의한 사양관리지도를 통해 생산성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특정 손해방지 사업으로서 유방염과 번식장애 예방사업은 국고의 보조를 6할 받고, 대사관정시험은 국고 보조를 7할 받는다. 그 외에 일반 손해방지 사업으로서 조합마다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관리 지원사업을 창의적으로 연구하여 행하고 있다.(중간생략)

4. 우리 나라의 상황과 고찰

(1) 산업동물 수의사의 수

최근(2006. 1)에 농림부에서는 산업동물 임상에 종사하는 수의사 수를 801명으로 발표하였으나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을 함께 진료하는 수의사 421명도 산업동물 임상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총 1,222명이 산업동물 임상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중 68명은 동물약품 판매만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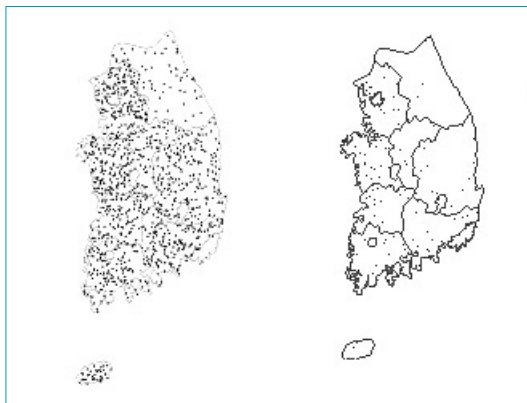


그림 1. 산업동물수의사의 주소(左)와 설문에 응답한 수의사의 분포(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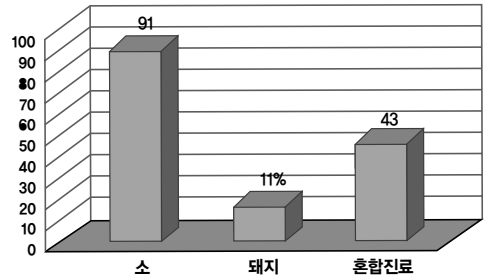


그림 2. 진료대상 동물(%)

업으로 하여 총수에서 제외한 1,154명만을 산업동물 수의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동물 수의사의 주소는 그림 1의 左와 같아서 산악이 많은 강원도를 제외하고 각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설문에 응답한 동물병원의 소재지는 <그림 1>의 右와 같아서 도별로 각도의 수의사 분포비율과 비슷한 비율의 수의사가 설문에 응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진료 대상 동물과 그 수

설문에 응답한 수의사 212명 중 소를 진료 대상으로 하는 수의사는 91%, 돼지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사는 11%, 반려동물과 산업동물을 같이 진료하는 수의사는 43%로서 소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그림 2). 돼지를 진료 대상으로 하는 수의사는 23명(11%)이라고 답하였으나 진료 대상 가축의 수를 묻는 문항에 대해 57명이 응답하여 돼지를 진료 대상으로 하는 수의사의 수에 대한 답변의 진실에 의심이 간다.

이 결과에서 우리 산업동물 수의사의 주요 진료 대상이 '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 12월 현재 젓소와 한우·비육우의 사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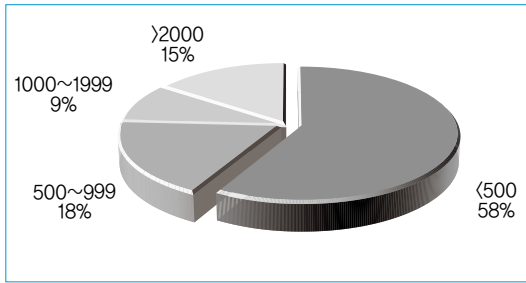


그림 3. 진료대상 가축수(젖소,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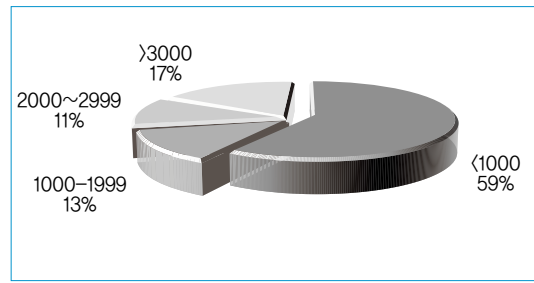


그림 4. 진료대상 가축수(한우·비육우)

두수는 각각 537,037두와 2,009,603두이고 수의사의 수는 1,154명이기 때문에 수의사 1명당 640

표 3. 산업동물 수의사, 젖소 및 한우의 수

지역	수의사	젖소	한우 비육우	젖소단위*	젖소단위 (수의사)
서울	19	136	289	165	9
부산	9	765	1,491	914	102
대구	30	4,501	16,197	6,121	204
인천	16	4,624	15,430	6,167	385
광주	17	763	3,945	1,158	68
대전	22	171	4,340	605	28
울산	8	1,773	26,194	4,392	549
경기	161	196,448	184,150	214,863	1,335
강원	53	25,333	138,231	39,156	739
충북	75	29,595	132,866	42,882	572
충남	140	96,724	260,063	122,730	877
전북	116	41,220	218,785	63,099	544
전남	117	39,868	332,455	73,114	625
경북	188	48,808	414,389	90,247	480
경남	146	40,333	234,594	63,792	437
제주	36	5,975	26,184	8,593	239
합계	1,154	537,037	2,009,603	737,997	평균 640

젖소단위*: 한우와 비육우는 젖소에 비해 질병률 및 환자당 진료비가 젖소보다 적기 때문에 한우와 비육우의 진료비 부담은 젖소 진료비 부담의 0.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환산한 단위임. 젖소 1두를 1단위로 계산하였음. 산업동물의 수는 2005. 12월 기준이며 국가통계와 약간의 차이가 있음. 약품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수의사와 특수동물수의사 1명은 제외하였음.

젖소단위를 담당하고 있다.

젖소단위는 한우의 경우 질병 발생률이 낮아서 진료비 부담이 젖소의 10% 정도되는 것으로 보고 젖소는 1두를 1단위, 한우는 10두를 1단위로 환산한 것이다(표 3).

설문에 응답하고 젖소를 진료 대상으로 하는 수의사(96명)의 경우 58%가 500두 미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18%는 500~999두의 소를 진료하고 있어 76%의 수의사들이 1,000두 미만의 젖소를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었다.

1,000두 이상의 젖소를 진료 대상으로 하는 수의사는 24%이었다(그림 3).

설문에 응답하고 한우와 비육우를 진료 대상으로 하는 수의사(167명)의 경우 수의사의 59%가 1,000두 미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13%는 1,000~1,999두, 11%는 2,000~2,999두, 17%는 3,000두 이상을 진료하고 있어 83%의 수의사들이 3,000두 미만의 한우 및 비육우를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었다(그림 4).

일각에서는 산업동물 수의사의 수가 부족하다고 제기 되고 있지만 위의 두 결과는 수의사들의 주요 진료 대상이 되는 소의 숫자가 젖소단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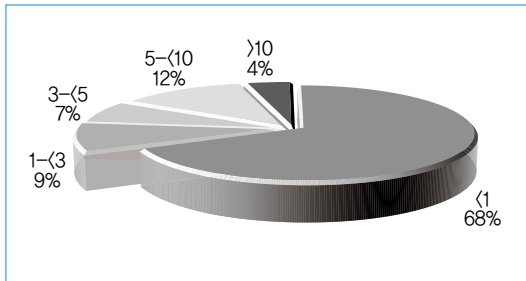


그림 5. 진료대상 가축수(돼지, 단위 : 1만 두)

환산하여 수의사 1명당 640 젖소단위라는 것과 함께 우리 산업동물 수의사들의 수가 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향은 이홍식과 이승욱¹⁷교수가 ‘수의사의 수급 및 장단기 전망’에서 발표한 것과 일치한다.

돼지의 경우에는 설문에 응답한 수의사의 68%가 10,000두 미만을 진료대상으로 하고 있었다(그림 5).

(3) 주당(週當) 진료 건 수

설문에 응하고 젖소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사(77명)의 주당 진료 건수는 92%가 50두 미만이었다(그림 6).

설문에 응하고 한우 및 비육우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사(174)의 주당 진료 건수는 66%가 10두 미만, 16%가 10~19두, 8%가 20~29두로서 90%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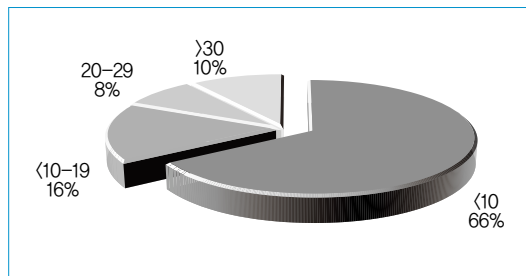


그림 7. 주당 진료 건수(한·육우,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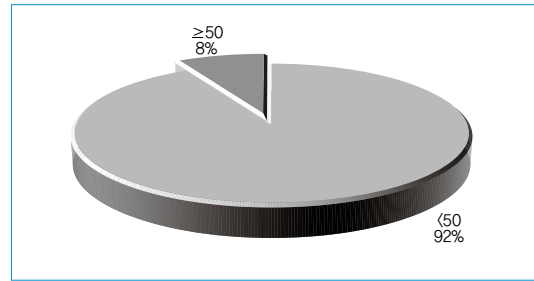


그림 6. 주당 진료 건수(젖소, 두)

30두 미만이었다(그림 7).

설문에 응하고 돼지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사 38명의 주당 진료 건수는 70%가 100두 미만이었으며 300두 이상인 수의사는 24%이었다(그림 8).

(4) 주간(週間) 평균 왕진 거리

설문에 응한 수의사들(206명)의 주간 평균 왕진 거리는 60%의 수의사가 500km 미만이었으며 24%의 수의사가 500~999km의 거리를 왕진하였다. 1,000km 이상 왕진을 다니는 수의사가 16.0%이었다(그림 9).

(5) 주당 평균 왕진 횟수

설문에 응한 수의사들(211명)의 주당 평균 왕진 횟수는 58%의 수의사가 10회 미만이었다(그림 10).

(6) 동물병원의 월간 약품 판매 순수입

설문에 응한 수의사 171명의 월간 약품 판매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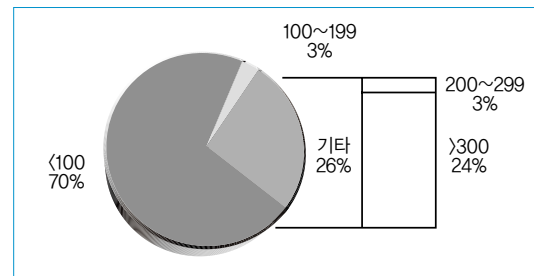


그림 8. 주당 진료 건수(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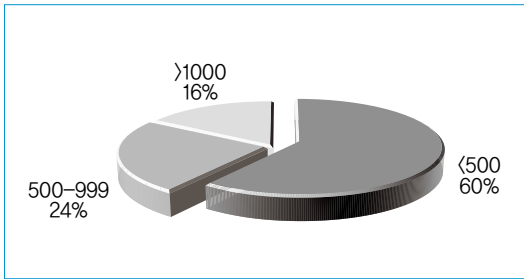


그림 9. 주당 평균 왕진거리(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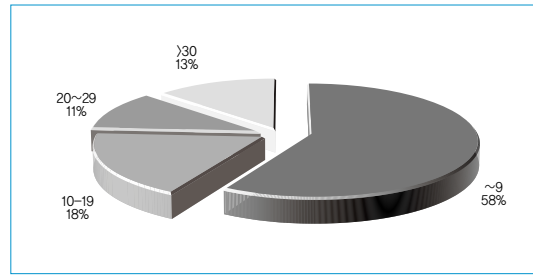


그림 10. 주당 평균 왕진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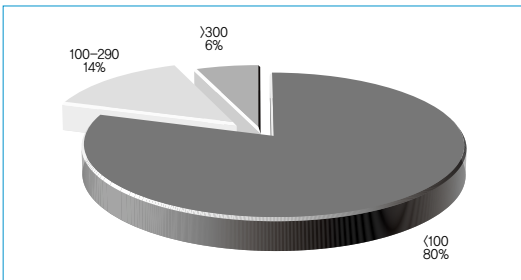


그림 11. 약품 판매 수입(만원/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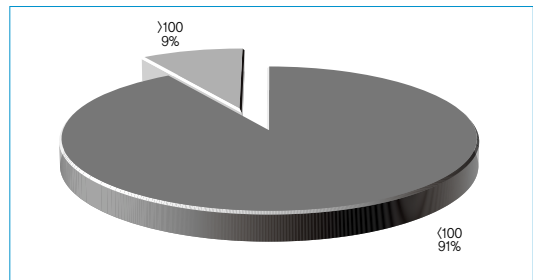


그림 12. 월간 방역 수입(만원/월)

수입은 80%가 100만원 이하이었다.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약품판매에 의한 수입이 미미한 수준이었고 동물병원 수입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일부(6%)의 동물병원에서는 3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그림 11).

(7) 월간 방역 수입

설문에 응한 수의사 163명의 월간 방역 수입은 91%의 동물병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방역 수입이 미미한 수준으로 동물병원 수입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그림 12).

(8) 월간 순수진료 수입

설문에 응한 수의사 210명의 월간 순수진료 수입은 47%가 200만원 이하이었으며 30%가 200~399만원 수준으로 77%의 수의사가 낮은

수준의 진료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월 6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수의사는 8% 밖에 되지 않아 산업동물 임상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수입 증대가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그림 13).

(9) 해당 지역에서 소득 수준

설문에 응한 181명의 수의사의 소득이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상위라고 응답한 수의사는 21%, 중위라고 응답한 수의사는 48%이었으며 31%는 하위라고 응답하여 산업동물 임상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수입이 대체로 높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그림 14).

(10) 동물병원의 수의사의 수

설문에 응한 수의사 213명 중 동업수의사와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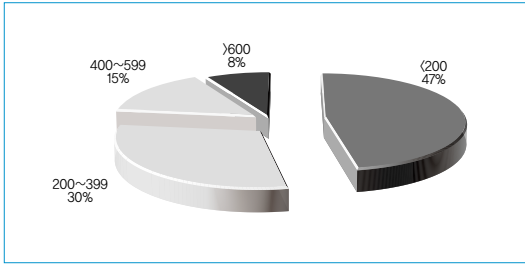


그림 13. 월간 순수진료 수입(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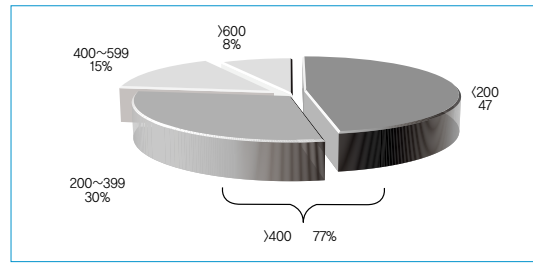


그림 14. 해당 지역에서 수입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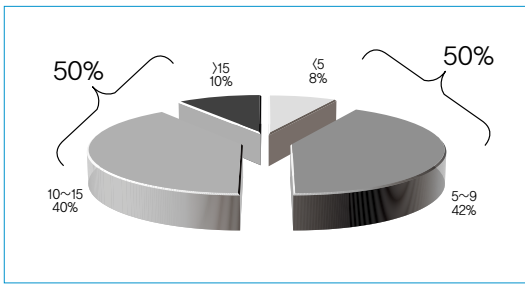


그림 15. 하루 평균 근무시간(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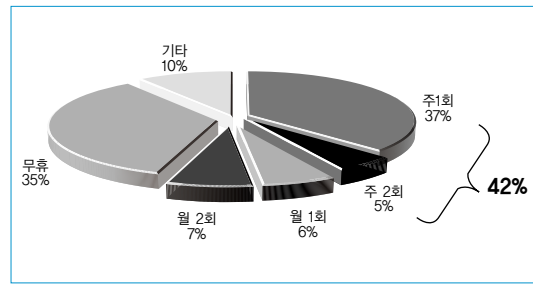


그림 16. 휴무일수

계 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는 18명으로 설문에 응한 213명의 8.5%에 해당되었으며, 다른 수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수의사는 10명으로 4.7%에 해당되어 2명 이상의 수의사가 함께 근무하는 수의사는 전체의 13.2%이고, 86.8%의 수의사가 혼자 진료를 하였다(표 4).

(11) 평균 근무시간

설문에 응한 수의사 220명의 하루 평균 근무시

표 4. 동업자 또는 고용수의사와 함께 진료하는 병원 수

동업 또는 고용수의사의 수	동업수의사	고용수의사
1	13	6
2	2	3
3	2	
4		
5	1	1
합계	18	10
(%)	(8.5)	(4.7)

간은 50%가 9시간 이하 근무하였고 50%의 수의사는 1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 그 중 10%의 수의사는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그림 15).

(12) 휴일수

설문에 응한 수의사 223명 중 주 1회 이상 휴일을 갖는 수의사는 42%에 불과하였으며 휴일이 없이 매일 근무하는 수의사가 35%를 차지하였다(그림 16). 이상의 결과들은 1인당 진료대상 동물이거나 진료 건수가 적고 수입도 적으면서도 휴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낸다.

(13) 수의사의 연령 분포

농림부에서 조사한 산업동물 종사 수의사의 연령대 분포는 <그림 17>에서와 같이 40세 이하가 23%, 41~50세가 23%, 51~60세가 23%, 61세 이상이 31%로 각 연령대에 수의사가 고르게 분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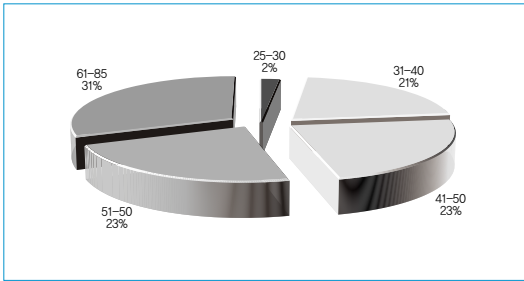


그림 17. 농림부 조사 산업동물 수의사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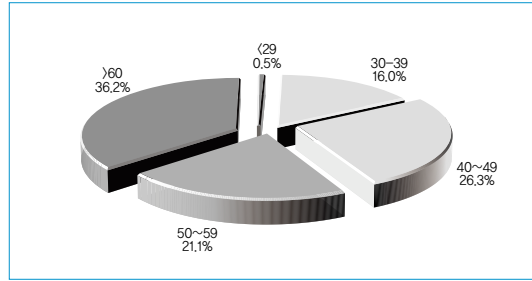


그림 18. 설문에 참여한 산업동물수의사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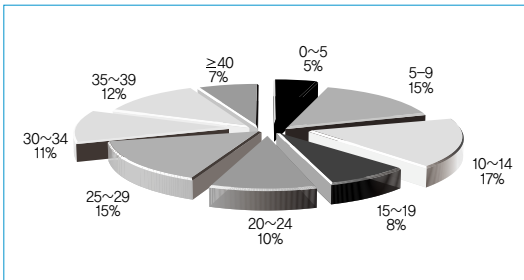


그림 19. 산업동물 임상에 종사한 기간(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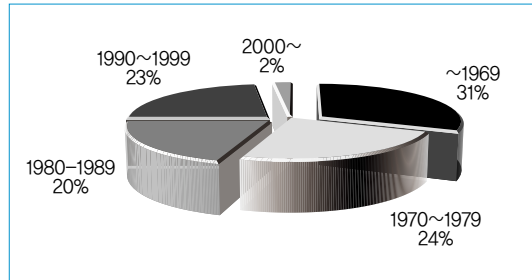


그림 20. 수의사 면허 취득 연도

였으나, 왕진의 부담과 산업동물 임상의 특성상 신체적으로 힘이 들어 은퇴할 나이인 61세 이후에 가장 많은 수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수의사도 60대 이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36%), 젊은 층에 속하는 40세 미만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16.5%) (그림 18).

(14) 산업동물 임상에 종사한 기간

설문에 응한 213명의 수의사가 산업동물 임상에 종사한 기간을 5년 단위로 보았을 때 10년 이상에서 30년까지 고르게 분포하였고 30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가 3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5년 미만 종사한 수의사가 5%를 차지하여, 산업동물 임상에 신규로 진입하는 젊은 수의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그림 19).

(15) 수의사 면허 취득 연도

설문에 응한 213명의 수의사의 면허 취득 연도는 1970년대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수의사가 31%를 차지하여 면허취득 후 35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의 비율이 높았다.

1970년대에 취득한 수의사는 24%, 1980년은 20%, 1990년대는 23%, 2000년대 이후는 2%를 차지하여 최근에 수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젊은 수의사의 비중이 극히 낮았다(그림 20).

(16) 면허취득 후 산업동물 임상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설문에 응한 195명의 수의사가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업한 비율이 69%를 차지하였으나, 응답자의 31%는 면허를 취득한 다음 5년 이후에 개업하여 다른 분야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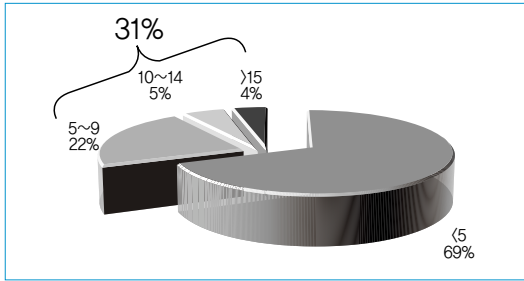


그림 21. 면허취득후 산업동물 임상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후에 산업동물 진료업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그림 21).

(18) 산업동물 임상 종사 전 직업

설문에 응한 213명의 산업동물 임상 종사 전 직업은 산업동물 임상의 전문직업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거친 13%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의사가 산업동물 임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분야에 종사하다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 개업 전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개업 전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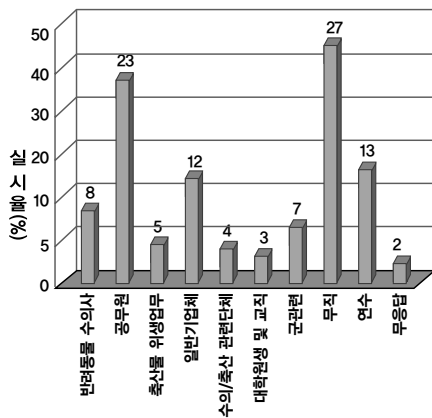


그림 22. 산업동물 임상 종사 전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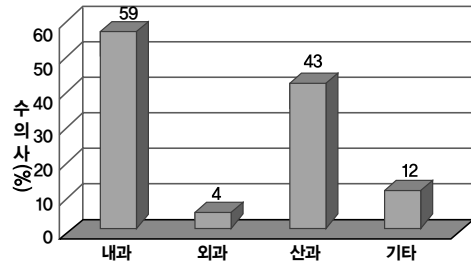


그림 23. 가장 빈번한 진료과목

(19) 가장 빈번한 진료과목

이 문항에 대해서는 212명이 응답하였으나 253개의 답이 나와서 두 개 이상의 과목이 대등하게 빈번하다는 생각을 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빈도가 높은 진료과목은 내과-산과 순이었으며 외과는 진료빈도가 낮았다(그림 23).

(20) 주요 수입 진료과목

이 문항에 대해서도 212명이 응답하였으나 258개의 답이 나와서 두 개 이상의 과목이 대등하게 수입 면에서 주요하다는 생각을 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입을 많이 올리는 진료과목도 내과-산과 순이었으며 외과는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그림 24).

(21)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군관리 항목

설문에 응한 213명의 수의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군관리 항목을 중복으로 답변하여 53%의 수의사가 번식관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50%가 전염병관리, 31%가 인공수정, 11%가 유방염관리,

10%가 발굽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그림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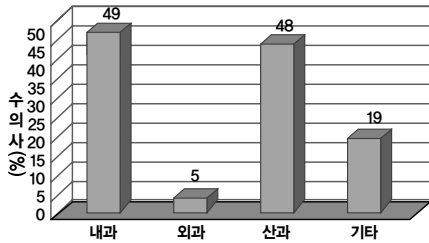


그림 24. 주요 수입 진료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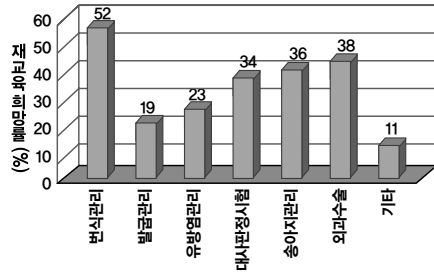


그림 26. 필요한 전문 재교육 과목

(22)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전문 재교육 과목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 분야의 재교육이 필요한 과목을 묻는 질문에서 213명 중 52%의 수의사가 번식관리에 응답하여 진료 견수에서나 수입 면에서 중요도가 높았던 점과 일치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외과수술(38%), 송아지 관리(36%), 대사판정시험(34%), 유방염관리(23%), 발급관리(19%)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다(그림 26).

농림부 통계와 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업동물 수의사의 당면한 문제를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동물 수의사 1인당 진료 대상 동물의 수가 적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의사의

수가 충분하다. 이 때문에 수의사 1인당 진료 견수와 수입(약품판매수입 + 방역수입 + 순수진료수입)이 4년 또는 6년간의 대학교육을 마치고 수년간의 실무경력을 쌓은 일반적인 직업인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스스로 지역 사회에서 소득수준이 다른 직업과 비교해서 중위 또는 하위급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당 평균 왕진 횟수가 적고 주당 왕진거리가 짧은 것도 축산농가에서의 수의서비스의 요청이 적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이와 같이 산업동물 수의사의 소득이 기대에 못 미치는 요인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는데, 우선 외적 요인을 타하기에 앞서 내적 요인에 대한 성찰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내적 요인으로서 전국의 수의과대학에서 산업동물 수의학에 대한 교육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그것은 대학동물병원들이 산업동물 환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산업동물 수의학의 교육수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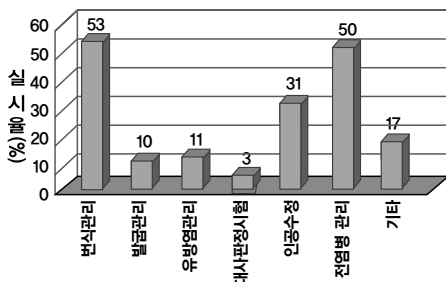


그림 25. 군(群)관리 항목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 그러나 그들은 '산업동물 수의학의 교육은 매우 복잡한 것이며, 전통적인 수의학 교육으로는 졸업생들이 산업동물 수의사로 일을 시작할 때 경제적인 활력을 제일 중요시하는 현대 축산농가에 건강과 생산의 통합관리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못한다. 그래서 산업동물 수의학 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졸업생들이 졸업 직후 산업동물 전문수의사가 될 자신감을 갖지 못해서 산업동물 수의사가 되기를 기피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설문에 응한 213명의 수의사들 중에서 개업 전에 다른 직업을 가졌던 경우의 87%가 산업동물 임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반려동물 수의사, 공무원, 축산물 위생 업무, 일반 기업체, 수의/축산 관련 단체, 교직, 군관련 등의 직업에서 일한 것으로 보아 충분한 준비 없이 산업동물 임상에 뛰어 들어 현대 축산농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며 이것이 수의서비스의 요청이 감소하고 소득이 낮아지는 한 가지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산업동물 수의학의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각 대학 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야 실력 있는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고, 그레야 축산농민으로부터 수의서비스의 요청이 증가하고 수의사의 소득도 증가할 것이다. 선진국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수의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현재와 같은 수준의 수의서비스로는 수의사 1인당 대상 동물수가 적기 때문에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힘들다.

그 다음 내적 요인이 아무리 잘 해결되어도 외적 요인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수의서비스의 수요

와 수의사의 소득은 높일 수 없다. 우리가 조사한 모든 선진국에서는 이미 산업동물 수의사가 부족하거나 앞으로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는 산업동물 수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 약 10년간 수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산업동물 진료업에 진입하기를 꺼려 노력의 수의사를 대체할 젊은 산업동물 수의사가 감소하고 있다. 이 사실은 농림부에서 조사한 산업동물 종사 수의사의 연령대 분포에서 40세 이하가 23%밖에 안 되고,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수의사도 60대 이후가 36%이고 젊은 층에 속하는 40세 미만은 16.5%밖에 안 되는 것으로 증명된다. 영국 국회의 환경식품농촌위원회의 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축산농가에서 수의서비스의 요청이 감소하면 산업동물 수의사가 감소하고, 산업동물 수의사가 감소하면 대학에서 산업동물 수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감소하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미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가 조사한 모든 나라에서는 사람이 소비하는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농장으로부터 식탁까지'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시대적으로 산업동물 수의사의 역할과 필요성은 점점 증대되는데 막상 산업동물 수의사는 감소하는 '아이러니'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 대책의 근본은 수의사가 축산농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킴으로써 동물복지와 건강수준을 높이고 동물약품의 유통을 통제하여 동물성 식품 내에 인체에 해가 되는 약물의 잔류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집행과 감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우리 나라의 법률은 그와 반대되는 규정을 하고 있다. 즉, 수의사법 제10조에서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조항에 ‘예외 규정’을 두어 시행령 제12조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와 비업무로 행하여지는 무상 진료행위’는 무면허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부령 제1537호) 제22조에서 ‘동물병원개설자는 동물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약품 상점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동물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니 수의사가 동물약품 판매하는 것은 위험이 뒤따르고 동물약품 상점에서 판매하는 것을 위험이 없다는 뜻인가? 심지어 마취제까지 아무에게나 판매하여 ‘여성 강도의 자동차에서 동물용 마취제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기까지 하였다(조선일보 2006. 8. 29).

우리는 무면허진료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무면허진료를 허용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동물약품의 종류를 제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잔류물질로 인해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할 수 없으며 수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무서운 동물질병과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조기 발견 및 조기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축산농민과 납세자에게 주는 피해는 계산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례행사처럼 각종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2006년 3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고, 축산관련단체에선 ‘식품안전관리추진위원회’를 결성하

였다. 식품안전관리추진위원회는 축산식품 위생관리 업무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식품안전처보다) 농림부에 일원화하여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당위성으로 ‘농장의 질병관리 단계부터 도축·가공·유통까지 생산부서에서 “농장부터 식탁까지”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들고 있다(18).

우리는 식품안전처와 농림부 중 어느 쪽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지 않다.

단지 정말로 “농장부터 식탁까지” 책임을 지려면 위에 기술한 잘 못된 법규부터 개정·보완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구두선(口頭禪)이 될 것이다.

이에 따른 농민의 과중한 진료비 부담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하면 된다. 그리고 식품위생과 동물약품에 관한 법률개정은 영국의 예를 본받으면 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법률제정 과정은 ‘비용’이 아니라 ‘안전·질·효율’을 기초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 정신을 따라야 될 것이다. 이것을 외면하면 결국 식품안전관리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고, 영국 국회의 환경식품농촌위원회의 보고서가 지적했듯이 우리 축산농민은 시장을 잃게 될 것이다.

미국의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기 전까지 광우병이 수입을 반대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지만 언제까지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것도 아니고, 국가간 FTA(자유무역협정)는 불가피한 추세인데 값싼 양질의 외국산 축산식품이 쏟아져 들어올 때 우리 축산식품이 위생과 안전성마저 확보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외면당할 것이 뻔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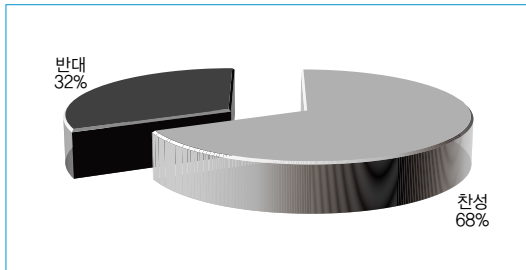


그림 27. 동물병원의 지역별 통합 찬반

영국 국회의 환경식품농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농민의 수의서비스(동물진료) 의뢰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농업소득으로 비싼 수의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영국의 동물건강·복지와 식품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인 지원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였고, 정부는 2005년부터 10년 동안 실천할 다섯 가지 전략을 세웠는데 이에 따르는 비용과 관련하여 산업체와 납세자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농민의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FTA협정이 타결될 경우 농민을 위해 책정하는 지원금의 일부를 지원하면 될 것이다.

동물의 질병과 폐사로 인한 농민의 피해와 수의서비스 비용을 축산업의 제한된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데 대한 지원대책이 제일 잘 마련된 것은 일본의 가축공제제도이다.

우리나라도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가축공제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제도는 폐사와 폐용된 가축에 대해서만 보상하기 때문에 농민의 가입율이 아주 저조하다.

우리는 설문을 통하여 일본의 가축공제제도에 대한 수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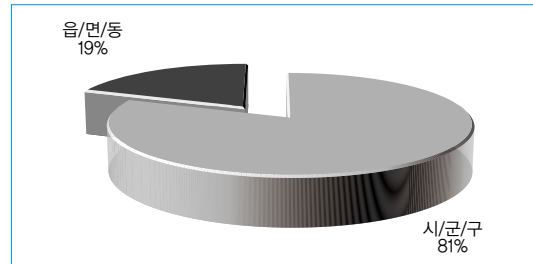


그림 28. 통합 단위

» 산업동물병원 통합에 관한 설문

• 지역별 동물병원의 통합

산업동물병원의 활성화와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로 동물병원을 통합하는 안에 대해 219명이 응답하였으며, 68%의 수의사가 찬성하였고 32%의 수의사가 반대하였다(그림 27).

• 통합동물병원의 통합단위

동물병원을 통합할 때 적합한 통합단위에 대해 144명이 응답하였으며, 시·군·구 단위가 81% 읍·면·동 단위가 19%로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통합하는 것을 지지하였다(그림 28).

• 동물병원의 통합 후 수의사의 신분

통합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신분에 대해 137명이 응답하였고, 해당 지역 수의사들끼리 독자적으로 통합한 병원의 수의사의 신분으로 근무하는 안에 57%가 응답하였으며 축산관련 단체(농협 등)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안에 31%가 응답하였고 공무원 신분에 12%가 응답하였다(그림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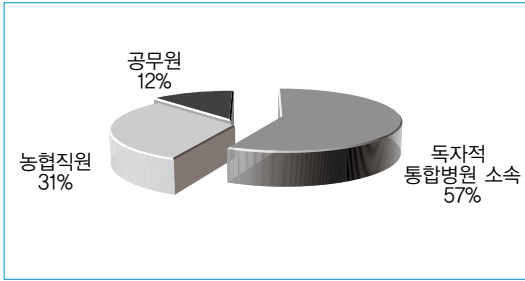


그림 29. 동물병원의 통합 후 수의사의 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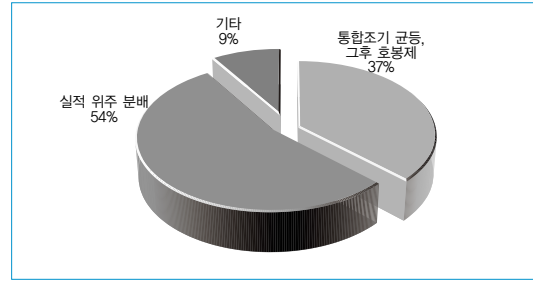


그림 30. 통합된 동물병원에서 수입금 분배

• 통합된 동물병원에서 수입금의 분배방법

통합된 동물병원에서 수입금의 분배방법에 대해 134명이 응답하였는데 54%의 수의사가 진료 수입 실적에 따른 분배를 원하였으며, 37%의 수의사는 통합 초기에는 균등 분배하고 그 이후에는 호봉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하였다(그림 30).

저자들은 두 안을 절충하여 통합초기부터 경력 연수(年數)에 따른 기본급에 성과급을 추가하는 방식이 불만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 동물병원 통합 후 수입증대 방안

동물병원 통합 후 수입증대 방안에 대해 134명이 응답하였으며, 43%의 수의사가 군관리(群管理)를 통하여 수입을 증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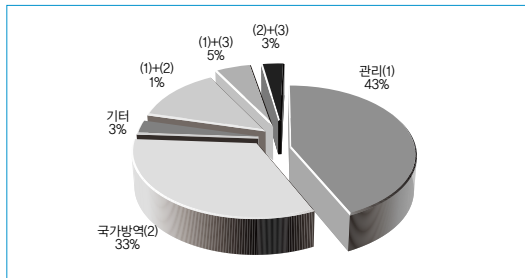


그림 31. 동물병원 통합후 수입증대 방안

였고 33%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방역업무에 참여하여 수입을 증대하기를 원하였으며 13%의 수의사는 군관리 실시와 국가에서 실시하는 방역업무에 모두 참여하여 수입을 증대하는 것을 원하였다(그림 31).

• 전문 재교육기관의 필요성

동물병원의 통합 후 전문교육의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전문 재교육기관이 필요한 지를 묻는 질문에 149명이 응답하였는데, 93%의 수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하였다(그림 32).

• 재교육 담당 기관

재교육을 담당할 적합한 기관에 대해 139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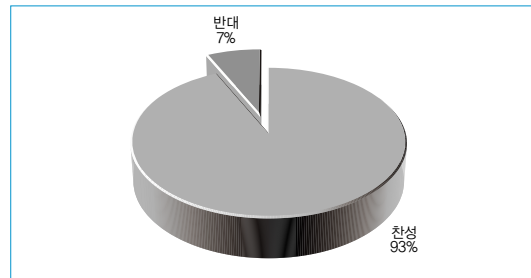


그림 32. 전문 재교육기관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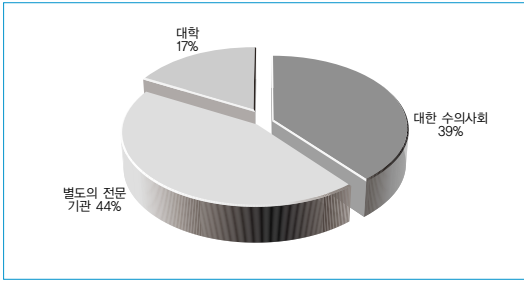


그림 33. 재교육 담당 기관

응답하였는데, 44%의 수의사가 별도의 전문 재교육기관을 설립할 것을 원하였고 39%의 수의사는 대한수의사회가 담당할 것을 원하였다.

그리고 17%의 수의사는 수의과대학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원하였다(그림 33).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대학이 산업동물 수의학 교육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각 대학에서 산업동물 수리학을 교육할 수 있는 교수들은 이미 정년퇴직을 하였거나 정년을 몇 년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으며, 젊은 교수들은 대부분이 반려동물수리학을 위주로 공부하여 산업동물 수리학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수가 별로 없다. 더욱이 대학교수들은 당장 개업수의사와 축산농민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실용적인 연구보다 교육부의 요구에 맞춰 SCI 학술지 게재 조건에 부합하는 연구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밖에 없고, 학부 학생들의 강의와 실습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농민과 개업수의사에게 당장 필요한 연구와 지도를 할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따라서 저자들도 교수에 대한 교육부와 대학의 평가 방식이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개업수의사의 재교육은 일본의 농업공제조합

연수소와 같이 공제조합 산하에 전문재교육병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

» 가축공제제도에 관한 설문

• 가축공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축산업과 산업동물 진료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및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사·폐용 가축에 대한 공제제도와 함께 질병치료에 대한 공제도 포함하는 가축공제제도의 전면적인 실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축공제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한 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213명 중 68%인 144명의 수의사가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2%의 수의사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고 반대하는 수의사는 없었다(그림 34).

그러나 이 설문의 문항이 아래의 글 상자 속의 내용과 같아서 ‘필요 없다’고 답하고 싶은 수의사가 그 이유를 기술하기 귀찮아서 ‘필요 없다’에 표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이 반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공제제도(보험제도에 해당)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 ② 필요없다. ‘필요없다’는 이유를 아래 글 상자 안에 기술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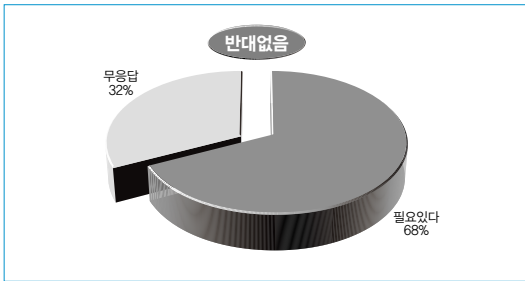


그림 34. 가축공제제도 도입 필요성

• 가축공제제도의 사업주체

가축공제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수의사가 원하는 적합한 사업주체에 대한 질문에서 145명이 응답하였는데, 39%가 별도의 독립적인 가축공제조합을 원하였고 36%는 농협중앙회가 가축공제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을 원하였다.

그리고 19%는 국가의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을 원하였다(그림 35).

앞에서 동물병원의 통합 후 수의사의 신분에 관한 설문에서 57%가 해당 지역 수의사들끼리 독자적으로 통합한 병원의 수의사 신분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했는데 여기서는 그보다 적은 39%가 별도의 독립적인 가축공제조합을 원한 것은 앞의 설문에 응답할 때는 공제조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응답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국가 수의서비스의 지원 체계 강화

Frawley⁸가 지적했듯이 평시에 동물건강정보/데이터의 수집을 수월하게 하고 예기지 못한 해외 전염병이 침입하였을 때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업 수의사들이 진단 실험실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진단지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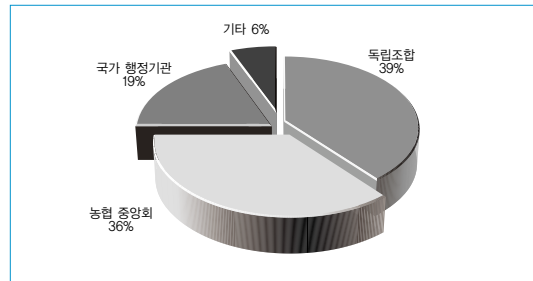


그림 35. 가축공제제도의 사업주체

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업 수의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진단실험실 시설로서 경기도 안양시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있고, 각도에 가축위생시험소(도에 따라 명칭이 다름)와 그 지소가 45개 설치되어 있다(그림 36).

이 중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각종 전염병, 중독성 질병, 기생충병 등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전국에 분포된 개업



그림 36.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가축위생시험소(•) 분포

수의사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각도에 설치된 가축위생시험소와 그 지소들은 개업 수의사들이 이용하기에 지리적으로 유리하지만 개업 수의사와 농민을 만족시킬 만한 진단서비스 능력이 부족하다.

개업 수의사들의 진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축위생시험소와 그 지소들의 인적 자원, 실험실 장비를 더 지원하고 운영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장에서 개업 수의사들이 동물의 각종 검체(sample)를 한 번만 채취하여 가축위생시험소 또는 그 지소에 접수시키면 1차 접수처에서 진단을 하던가, 그럴 능력이 안 되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검체를 보내야 할 경우는 1차 접수처에서 검체를 적시에 수송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산업동물 진료체계는 국가의 동물건강·복지 식품위생안전 및 공중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가에서 수의사를 양성하고 수의학 관련 국가기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기본 목적이 이것들을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에 산업동물 진료체계의 개편방안은 이와 관련된 상황부터 검토하고 이와 연계하여 풀어야 할 문제이다.

시대적으로 동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사람의 식품위생과 안전에 관한 표준과 사람의 기대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수의사의 역할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산업동물 수의사의 수는

감소하는 아이러니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산업동물 수의사의 수는 충분하지만 신규로 진입하는 수의사의 수가 감소해 평균 연령이 노령화하여 은퇴하는 수의사를 대체할 젊은 수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 예측된다.

어느 나라에서나 산업동물 수의사는 지방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의 혜택이 적고, 자녀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배우자의 취직 기회가 적고, 환자의 수가 적어도 병원에서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많으며, 왕진으로 인한 시간부담, 큰 동물을 다루는 데 따르는 잦은 부상과 만성적인 육체적 피로, 그리고 노령화되면 일을 하기 어렵다는 걱정 때문에 졸업생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영국과 같이 현재 축산업에서 농민의 상대적인 소득은 감소하는데 비해 수의서비스의 비용은 증가하여 농민이 생산비를 절약하는 수단으로 자가진료를 선호하고 수의서비스의 요청을 기피하는 것이 산업동물 수의사가 되기를 기피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에 의해 자가진료가 무제한 허용되고 있다.

농민들이 수의서비스 요청을 기피하면 당연히 수의사의 수입은 감소하고, 수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산업동물 진료업에 진입을 기피하게 되며, 수의과대학에서는 산업동물 수의학을 전공하는 교수의 수가 감소해서 그 나라의 동물 건강·복지 및 식품위생안전은 위협받게 된다.

유럽연합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식품위생 관련 규정과 동물약품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영국 정부는 식품위생과 동물약품 관련 규정

이 강화되면 농장에서 수의서비스의 비용이 증가하는데, 이것을 농민, 축산식품사업자 및 납세자가 분담하도록 전략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의사법’과 그 ‘시행령’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을 개정하고, 영국과 같이 유통질서와 관련하여 동물약품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수의서비스 부분에서 증가하는 농민의 부담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농민이 일부 분담하는 가축공제제도도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설문에 응답한 수의사의 68%가 가축공제조합 제도의 도입에 찬성했으며, 가축공제조합이 동물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개인동물병원들이 지역별로 통합해야 한다.

설문 응답자 중 통합에 찬성한 사람이 반대한 사람의 두 배 이상이기 때문에 지역별(시·군·구 단위)로 희망에 따라 통합 및 가축공제사업에 참여할 것을 유도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의사들은 가축공제조합의 주체는 독립적인 조합 또는 농협이 되기를 원했으며, 수의의 신분은 독자적으로 통합된 동물병원의 수의사의 신분을 갖기를 원했다.

이것은 지역별로 수의사들끼리 자유의사에 따라 통합을 하여 공제조합 주체측과의 계약에 의해 공제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민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공제사업에 참여하는 수의사들에게 강력한 재교육을 시킬 시스템을 갖추고, 개업 수의사가 이용할 수 있는 진단실험실과 동물 검체의 전달체계를 강

화해야 현재의 낙후된 진료 수준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

FTA협정이 체결되고 관세가 철폐되면 선진국의 값싸고 질이 좋은 축산식품의 수입이 현저히 증가할 터인데 우리나라 축산식품이 위생과 안전마저 확보하지 못하면 농민은 국내 시장을 완전히 잃고 파산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결국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가축공제제도가 있지만 폐사 및 폐용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해주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농민의 경제적인 부담은 폐사 및 폐용 사고에 의한 부담보다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

그리고 농민들은 보상받는 공제금보다 부담하는 공제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생각하여 공제 가입율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

앞으로 일본과 같이 발전된 가축공제제도가 채택되고 정착되려면 수의사, 농민, 정책입안자, 보험법 및 보험사업 전문가, 상법 전문가, 통계 전문가 등 많은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그룹을 만들어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본 정신은 비용이 아니라 동물의 건강·복지, 사람의 식품위생안전 및 공중보건에 기초하고, 농민의 부담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연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농민은 자가진료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지고, 동물건강·복지, 식품위생안전, 공중보건, 산업동물 수의사의 안정적 확보 및 사업의 안정 등, 여러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